학위논문자격 및 자격시험 안내

❖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(중요)

1. 자격시험(어학시험/종합시험) 합격자
  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자격시험 제출(합격 처리) 불가
2. 총평량평균 : 3.0 이상
3. 이수학점
   · 석사/박사과정: 30학점 이상(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), 27학점 이상 (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)
   · 통합과정 : 54학점 이상(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), 48학점 이상(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)
   ·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
4. 연구계획서 제출자격
   · 상기 1) ~ 3)항 요건(자격시험 합격, 총평량평균, 이수학점) 충족된 자
   · 당해 학기 수강 신청 학점도 학점 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하여 인정 (단, 미 충족 시 졸업 불가 유의)
   ·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(중요)

5.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
   ·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석사학위과정은 '연구지도 I' 1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'연구지도 II'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
   · 연구지도 이수 학기 철저한 확인 필요

6. 기 타
   · 영문 성명 확인 :학사포탈의 영문 성명으로 학위기와 각종 영문증명서 발급
   · 작성 예) FAMILY NAME, GIVEN NAME (HONG, GILDONG / HONG, GIL-DONG / HONG, GIL DONG)

❖ 26-2학기 대학원 자격시험(어학시험/종합시험)결과에 따른 논문심사 일정

자격시험 시행	자격시험결과 입력기간	연구계획서 제출 (자격시험 합격 시)	과정	논문심사(예/본심)	졸업 예정 (본심사 합격 시)
2026-2	2026. 12. 1. (화) ~ 2027. 1. 15.(금)	2027-1	석사	2027-1	2027년 8월
			박사	2027-1	2027년 8월

❖ 대학원 학칙 및 내규

대학원 학칙
제9조 (재학생의 권한) 재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,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으며,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.
22조(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)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으로 한다.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 내규로 정한다. ③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결과는 등록학기에만 반영된다.
제36조 (논문제출시한) ③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시한 연장 사유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제출 시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다.
학위논문에 관한 내규
제3조 (논문작성 언어 및 규격) ①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 ② <삭제> 1. <삭제> 2. <삭제> ③ 석사학위논문의 규격은 [별표1, 2]에 따른다. ④ 박사학위논문의 규격은 [별표1, 2] 및 논문작성 언어에 따라 해당 호를 따른다. 1. 영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영문요약 및 국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. 2.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논문작성 언어로 된 요약과 영어요약 및 국문요약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. 3.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국문요약 및 15쪽 내외의 영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.
제19조 (박사학위논문의 공표)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.